

❖ 정부시책 ❖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시행

오는 10월부터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 대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신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출액중 R&D 비중이 3%이상인 기업, 또는 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이용사업, 영상진흥기본법의 영상물 창작 신기술이용사업 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벤처기업에 투자시 개인 또는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한 경우로 하되

개인당 투자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계획 수립 대상기관으로 정부부처의 경우 국방부·정통부·과기처 등 10개부서,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기관으로 지정했다. 】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 및 벤처빌딩 건립에 필요한 국유지의 매각가격은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연간 임대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도 20년이내로 하되 장기임대를 위해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통신부는 벤처빌딩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빌딩에 교체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로 하고 규모는 공장을 가진 경우에만 공장면적을 1천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한편 통신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76개의 연·기금을 벤처기업에의 투자가 허용되는 연·기금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했다.

關稅減免 연장방안 추진

통상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장자동화기기 등 43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부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한보·기아사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말로 혜택이 끝나는 공장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오는 200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산부는 올해말까지만 운용되는 공장자동화기기·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내년부터 다시 연장해 '98년에는 감면율을 50%, '99년에는 40%, 2천년에는 30%, 2001년에는 2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관세 감면율은 기능별 감면의 경우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장자동화기기 등은 20% ('96년 감면액 1,286억원), 기업연구소 등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은 80% (367억

원),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50% (52억원)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또 특정산업 감면의 경우 수출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물품은 20% (377억원),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은 20% (20억원)의 감면율이 적용돼 운용되고 있다.

통신부는 올해말까지 운영되는 기능별 감면제도와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제도 가운데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고 공장자동화기기 등 기능별 감면은 합리화투자 촉진과 생산비용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신부는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전체 소요액이 35조에 이를 전망이나 이 가운데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비롯한 원화설비금융과 외화대출을 포함한 외화자금 등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21조원 정도에 불과해 공장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관세감면 연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유 및 경영에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8월 20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10월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시행 키로 했다.

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약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다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에 속해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산부는 “벤처기업의 경우 외

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벤처기업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고급기술이 기반이 되는 벤처기업은 자본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통산부는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창업후 규모가 확대되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을 창업일부터 다음 연도 말일까지 매월말일 현재 인원을 합해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토록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통산부는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중소기업청장을 추가했다.

中企 구조개선사업 지원 강화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를 현

행 적립된 기금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사용목적에 수출산업화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외판로지원을 추가,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국외판매 알선 등의 지원외에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방소재 중소제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수출기업화사업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청장이 관련 기관들에게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요청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마련하고도 브

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판매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기청에서 인증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제품마크 획득제품을 정부의 우선구매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기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전시사업과 중소기업 공동상품권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유통센터(종전 중소기업전용백화점)를 건립하고 이 센터의 운영을 위해 별도법인으로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통산부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청장이 재경원장관 및 통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5년단위로 중소기업구조개선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매년 연도별 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수입제한 大幅 완화

정부는 수입선다변화품목 중 독과점품목을 조기 해제하고 수입제한적 추천제도를 개선

하는 한편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각종 수입제한조치들을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

다. 또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한 진입규제도 크게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도 회사정리법을 적용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중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시장개방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독과점적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들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해제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수출입통합공고와 관련한 수입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공고상의 각종 제한들을 완화하거나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수입추천 허가과정에서 자의적 재량권과 수입규제적 운용을 지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독점을 개선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품성분내역서’, ‘외국제작자의 보증서’ 등 병행수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수입부대서류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88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단계적 해제시기 및 대상을 일정기간 예시하고 ’99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모든 업종을 해제해 나가기로 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에 가격 및 품질에 의한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26개 업종 1,043개 품목)은 중소기업 위탁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현행 회사정리법이 자산 200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상 회사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사회적 판단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회사정리가 어렵다고 보고 회사정리법의 보완 또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업생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정관리제도의 감독자로서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채권·채무자간 이해를 조정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전담할 파산법원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불필요한 사업부문을 관련기업간에 사고 팔 수 있도록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도입 이전이라도 실질적 소유관계가 없는 기업분할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